#### 제422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

국회사무처

일 시 2025년2월25일(화)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6)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9)
-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5)
-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6)
-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8)
-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3)
-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6)
-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6)
-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98)
-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16)
-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30)
-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61)
-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983)
-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843)
-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72)
-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03)
-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75)
-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42)

- 19.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유미숙 외 51,4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9)
-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89)
-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60)
-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819)

# 상정된 안건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6)3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9)3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5)3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6)3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8)3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3)3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6)3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6)3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798) ····································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16)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30)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61)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983)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843)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72)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03)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75)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42)4

- 19.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유미숙 외 51.4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10시02분 개의)

# ○소위원장 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하여 21건의 법률안과 1건 의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및 청원 심사를 위해서는 과기부2차관과 방통위 부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할 경우에 먼저 위원장의 허가를 얻 고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심사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법안별로 의 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에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앞에 있는 마이크의 발언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를 켠 다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6)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9)
-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5)
- 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6)
-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68)
-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3)
- 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6)
- 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6)
-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798)
-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816)
-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30)
-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61)

- **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983)
-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843)
-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72)
-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03)
-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75)
-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42)
- 19.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유미숙 외 51,4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9)
-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389)
-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560)
-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819)

(10시03분)

○소위원장 김현 의사일정 제1항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조국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소위의 의사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주신 자료 중에 의사일정 1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의 규정의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공공기관 내에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의 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이 포함되는지가 조금 불투명한 면이 있습니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 4조 이런 데를 보면 지자체가 설립·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정부 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입법의 공백을 채우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쪽, 개정안 조문대비표 보시겠습니다.

정의 규정의 공공기관의 정의에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합니다. 포함하게 되면 이후에, 자료 3쪽 보시겠습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기관의 정의 규정에 보면, 16호 에 가·나·다·라·마 호까지가 있는데 마 호를 보시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이것도 공공기관에 포함이 되는데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에 가 보면 여기에 지자체가 출연한 출연기관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행령을 개정 해서라도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 이게 법에 상향해서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에 해도 충분히 저 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지자체 출연기관도, 아래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의무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 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게 해야 되고 또 공공지능정보화 의 추진 의무도 있고 또 지능정보화의 민간 확산 의무도 있는데, 또 뒤의 페이지 보시면 지식재산이나 지식재산권의 보호 의무 이런 것도 공적 주체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을 포함하는 것도 저는 입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정부는 동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는 바입 니다.
- ○**소위원장 김현**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혹시 출연·출자 기관의 의견을 좀 들어 보셨나요?

-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저희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의견을 직접 들은 건 없고요. 과기정통부를 통해서 정부 부처의 입장, 과기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 ○소위원장 김현 과기부에서는 확인이 좀 됐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지금도 이 법의 개정 취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던 3페이지에 보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공공 기관 정의의 16호 다 항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래서 여기에도 해당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기본법인 모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자정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침과 내용들을 내려 주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이 렇게 처리를 하는데 지능정보화 모법에서도 명확히 정의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내 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 테크노파크, 지방의 문화재단 이런 것들이 한 800개가 있습니다. 그걸 다 하지는 않고 50명 이상의 인원, 3억 원 이상의 출자금 이렇게 해서 행안부가 지자체의 정보화 사업들하고 시행계획을 접수하는데 정작 모법인 법에 그 출연과 출자 기관이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래서 다 항으로만은 부족하다고 해서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여러 가지 법령 해석의 명확성도 필요하고 해서 이 법에 담아 주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가장 높이겠다 판단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한민수 위원님.
- ○한민수 위원 그러면 800개 중에 이렇게 대상이 될 게 몇 개나 될까요?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공공기관에 명시되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10% 정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저 숫자의 한 80개 정도 됩니다. 10% 정도 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이상휘 위원 잠시만. 그러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그런 공공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아마 공운법에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입법의 방식인데요. 저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우리 상임위에서 정리해 주실 때그때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행안부에서 이모법 이후에 전자정부법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이나 공공기관의 책무에 대한 해당 여부를 명확히 좀 해 주기를 오히려 바랐습니다. 그런 점에서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도 명확히 해 줄 것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정부를 담당하는 행안부에서 그 시책을 시행하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더 얘기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2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보시겠습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유지·관리 사업과 별도로 발 주하는 설계·기획 단계의 사업으로서 과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에 국가 기관 등의 장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현재 보면 국가기관의 장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안보라든가 신기술 분야라든가 외교·치안·전력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것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참여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참여하도록 한 이 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상출제 기업을 대규모 공공 발주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쪽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 품질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사회문제가 된 게 있는데 설계·기획 단계에서부터 조금 역량 있는 사업자가 참여를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의 설계·기획 단계 사업에서부터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측면이 있고 또 대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공공사 업의 오류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저하되고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심대 하기 때문에 국민 불편,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다만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에서 다른 이견을 내고 있습니 다. 그 이견에 관해서는 이따 참고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정부가 그래도 이해관계인들 의 의견을 상당히 수렴하고 조정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따 추후 정 부로부터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전산망, 대규모 공공전산망 장애 문제 등을 개선하 고 그런 취지를 감안하면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이 잘 조율이 된 점을 감안하면, 이런 점을 감안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조문대비표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게 설계·기획 단계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행 안…… 조문대비표 제일 좌측을 보시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대기업을 아래에 5호의 경우에만 예 외적으로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안, 안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6호를 개정안에 추가로 시행을 하는데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 개발·운 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에 설계·기획 단계 사업에, 그것도 과기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사업에 대기업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4항, 5페이지 좌측을 보시면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은 절대로 참 여를 제한해야 됩니다'-예외규정, 아까 안보 분야를 제외하고는-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 용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기획 단계에 과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설계·기획 단계부터 사업자 참여를 확 대하게 되면 퀄리티가 높아진다 그다음에 시스템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차원 그다음에 장 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라든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차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쪽을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정 사업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 상출제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 게 되면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대형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 해서 국민 불편,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현행 사업을 보시면 대기업은 모든 사업에 참여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65개 정도 가, 이거는 과기부의 자료에 따르면 65개 정도의 기업이 해당되는데요. 그런데 기획 단계 에 이런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참여하도록 하면 퀄리티는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기부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외에 부칙 관련, 8쪽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경미한 자구 수정입니다.

그리고 9쪽의 참고자료를 보시면 이 점에 대해서는 과기부로부터 조금 설명을 더 추가 적으로 보충해서 들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 그다음에 중견기업의 참여, 특히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하한가격 20억을 40억 으로 높여서 중소기업의 참여 공간을 조금 넓힌 점 이런 등등을 감안하면, 그 자료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출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면서 중견기업 관련해서도 700억 이상 사업에서도 대기업도 참여를 허용하고 그다음에 12쪽 보시면 중소기업도 20억 미만 구간에서 40억 구간으로 상향을 했고.

그다음에 13쪽 보시면 중견기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중견기업도 참여를 하면 상생협력 평가제도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에…… 종전에는 중소기업만 참여했을 때는 상생협력 점수를 줬다 그러면 중견기업 참여도 상생협력으로 인정하는 측면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과기부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이해관계도 조율한 안으로 고시에 반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개정안이 궁극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대규모 공공소프트 웨어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과기부의 입장을 한 번 더 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배경이 필요하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 ○한민수 위원 지금 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규모가 연간 얼마 됩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기준에 따라 좀 다른데 5조 원 내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한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기부도 동의를 했고, 수석전문위원 말씀이 이걸 대기업 상출제 회사도 다 들어오게 하면 정보시스템 오류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인다, 이런 사 례가 있어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해 가지고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가지고 지금 이 법을 바꿔야 된다. 뭐가 있습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의 논쟁 거리는 있습니다.
- ○**한민수 위원** 어떤 사례가 있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를 들어서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 그리고 지방세 시스템 그리고 계속적으로 대법원 서비스 이렇게 해서 행안부가 운영하고 있거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오류들이 계속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 ○한민수 위원 그 오류 발생의 원인이 그러니까 이른바 상호출자제한 회사, 상당히 규모가 클 텐데 10조 원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 ○한민수 위원 그 회사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겁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한민수 위원** 그 원인을 따져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래서 그 시스템이 항상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대부분은 상생협력의 가점, 제일 마지막 지침에 있는 것처럼 서로의 퍼센트를 나누어 가

면서 이렇게 책임 소재를 구분하면서 논쟁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떤 파트에 어떤 내용이 될 거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행정 안전부나 과업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논쟁을 좀 따져 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민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행법에도 9페이지에 나왔듯이 연매출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모든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 가 가능하고, 대기업 중에 일정 금액 이상 참여가 2004년부터 가능해 왔고 그중에 상출 제 소속 회사는 원칙적으로 참여가 예외되는 사항 빼고는 된 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렇습니다.

○한민수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될 때는 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런데 지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같이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래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12년 말, 13년 초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상출제 대기업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랬 냐면 소위 말해서 소프트웨어산업에서 SI를 담당하는 산업에서 대기업의 자회사, 그러니 까 그 SI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하도급이라는 내용에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 중 소업체들에 대한 갑의 위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당시의 이슈가 대기업에 내부거래들이 좀 발생했고 하는 부분이 있어 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대기업은, 상출제 대기업은 오지 마라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 13년 정도 이루어졌는데 중견기업들과 내용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최첨단 기술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좀 부족한 게 나타나기도 하 고 유지·보수와 또 하는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기 상출제 기업의…… 법에서는 이걸 하지만 2조, 3조에 보면 실제로 고시에서 는 거기에 대한 사업자 규모와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허용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사업자 간 협의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현재 예외로 두고 있는, 예 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중의 80% 이상이,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규모를 보니까 700억 정도 규모는 일단 대부분이 상출제 대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분야여서 어 느 정도 하한을 둘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고시에서 700억 규모 이하는 여전히 상출제 대 기업이 못 들어오게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한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 800억인데 그걸 좀 낮추는 겁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800억은 중견기업의 규모입니다. 중견기업의 규모 니까……
- ○**한민수 위원** 아, 액수를 따질 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런데 공공사업의 발주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억 이상에서는 못 들어오게 하고, 대신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을 드렸 습니다마는 중소기업들만 할 수 있는 게 현재 저희 고시에 20억 규모입니다. 13년의 20 억 규모인데 이게 전체 커지니까 40억까지는 중소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중소업체의

진입도 늘려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되 유지보수나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상생협력의 기술평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예외를 두겠다 해서……

지금 협의가 됐던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몇 차례 거쳤는데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중소기업을 대표해서 중기중앙회의 정보산업협동조합 그리고 중견기업으로서 중견소프트웨어기업협의회 그리고 대기업의 IT서비스산업협회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대표하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과 이 고시안까지 협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합의가 되어 있고. 중기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협의안에 대해서 아마 이사회까지 거치고 현재 동의를 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상휘 위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 ○소위원장 김현 이상휘 위원님 하세요.
- ○**이상휘 위원** 존경하는 김장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인 것 같은데.

차관님, 일반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단계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것은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 ○이상휘 위원 그러면 개발·운영하고 유지·관리 사업은 이런 규제가 있습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유지·관리도 규모에 따라서는 현재는 상출제가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 ○이상휘 위원 저도 기업에 있을 때 이게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던 얘기예요, 2004년도에. 그때 삼성SDI라든가 참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법에 대한 내용을 죽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이걸 정리하자 그러면, 결국 설계·기획 단계의 사업에 대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문을 열어 주는 거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별도로 발주되는 설계·기획 단계에 대기업 문을 열어 주는 겁니다.
- ○이상휘 위원 그렇지요? 그 문을 열어 주는 걸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 가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 보니까 2012년에 개정이 됐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은 기술력에 대한, 뭔가 설계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일단 AI나 여러 가지 첨단기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가 사실은 모법을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아까 지능정보화 기본법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법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 주셔야 행안부나 내용에서 여러 가지 탄력성을 받을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이상휘 위원 물론 국민들의 편익이라든가 과학기술 일부 시장에 대한 기술력 이런 걸 하게 되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기술의 노하우를 빗장을 열어 줘서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건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5조 원 규모의 시장이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 ○**이상휘 위원** 5조 원 규모의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중소 소프트웨어하

고 같이 경쟁을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ISP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금액이 적습니다, 일 단은 전체적으로 발주에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다만 5조 원 시장 다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발주되는 700억 이상은 여전히 제한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제 한을 시키되…… 700억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되 700억 이하에 대해서는 여 전히 막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자칫하면 오히려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잠재 력이라든가 기술 개발력이라든가 향후 미래라든가 이런 걸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 로 여덟 차례 조정 회의를 거쳤을 때 보면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 대기업 상출제 기업이 나가면 그 자리에는 중견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 중소업체가 다 올라 오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상출제 기업을 제외하면 중견기업들이 거기의 전체적인 계약 주체가 되는 부분이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 차라리 대기업이 전체적 인 지휘를 해 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다만 중견업 체들의 .....

중소업체에 저희가 들었던 부분은 대신에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금액도 높아졌으니 20 억 이하로만 들어오게 하는 부분을 40억으로 늘려 줘서 중소업체의 시장을 좀 늘려 달라 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사업이 저희들도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대기업과 중소업체 대립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거기에 사업자 규모들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정리할 까 이 두 가지로 고민했던 부분이어서 합의에 이르렀던 부분은 고시에서 700억의 규모 정도면, 전체적인 현재의 엠피리컬(empirical)한 예외 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그 정 도면 되겠다 했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각종 대표하는 협회에서는 다 동의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 ○**이정헌 위원**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기획 단계의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대기업의 문을 열어 주는 것이지 요? 그러니까 개발이나 운영, 유지·관리는 여전히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한 건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법 조항이 2항·3항·4항이 있는데 2항은 고시를 통해서 일정 규모를 어떠어떤 사업에 조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규 정이고 3항은 예외 조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안보·외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 기업 참여를 허용하되…… 대기업이라는 게 상출제 대기업이 있고 아까 한민수 위원님이 하문하셨던 800억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4항에서는 상출제 대기업은 일단 참여를 원 칙적으로 배제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빼는 부분이고, ISP에 허용하는 부분 그리고 700 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상출제 기업을 허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헌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유지·관리에도 대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해 지는 겁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규모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 ○이정헌 위원 당초에 이 법이 어쨌든 중소·중견기업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 였을 텐데, 대기업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한선·하한선을 정했다고는 합니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만 참여 가능한 사업 구간을 20억 미만에서 40억 미만으로 확대하셨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5조 원의 시장 가운데 40억 미만의 사업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현재는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구간이 예산 비중으로 한 35% 정도입니다. 그런데 40억 미만으로 하면 49.9%로 한 14% 이상 늘어나고 금액적으로는 한 4000억 이상, 중소 기업만 참여하는 구간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 **○이정헌 위원** 35%가 49.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황규철** 예, 그 정도입니다.
- ○이정헌 위원 그러니까 40억 미만까지는 대기업은 전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중견기업도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 ○이정헌 위원 중견기업도 못 들어오고요.

그러면 40억에서 700억 사이는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이정헌 위원 그러면 40억 이상은 대기업이 참여가 가능한 거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황규철** 중소기업······
- ○**이정헌 위원** 중견기업의 구간이 또 있습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황규철** 예, 중견기업 구간입니다.
- ○**이정헌 위원** 중견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황규철 중견기업은 40억 이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고요. 40억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다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견기업은. 다만 대기업은 40억 이상이라고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700억 이상에 대해서 상출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데……
- **○이정헌 위원** 700억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황규철 예.

그런데 그 숫자가 1년에, 금년 같으면 2개의 사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이정헌 위원 2개 정도의 사업입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황규철 예.
- ○**이정헌 위원** 5조 원 시장 가운데 700억 이상의 사업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올해가 그렇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관 황규철** 금년에 그렇습니다. 5년간 평균으로 해 보면 연간 4개 정도였습니다.
- ○**이정헌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700억 이상의 사업은 중견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2개 정도의 사업을 땄던 건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실제로는 중견기업과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의 컨 소시엄 형태로 진행했던 거고요.
- ○**이정헌 위원** 컨소시엄으로……
- ○소위원장 김현 그런데 지금 여기 도입해야 된다는 '동의'에 보면 'AI 도입 촉진 등 공 공소프트웨어사업 체질 개선 기대'인데 이것이 반영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개정 시에 AI 도입 촉진 등일 경우가 앞서 말씀하셨던 700억 이상, 현재까지는 2개에 해당되지만 이것 으로 확장이 되면 더 넓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개념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님. 다만 공공사업 의 경우는 무작정 늘어날 수가 없고 실제 예산 베이스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시스템들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차 세대 시스템들을 앞으로 기획하고 발주하는 부분들은 있고요.

수행과 ISP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저희가 중점을 잡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공 공사업들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 가지 데이터의 전문성을 높이는 IS 부분은 일단 전문성을 가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ISP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부 분입니다.

- ○**이훈기 위원** 차관님, 대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따내면 공공소프트웨어 장애가 많이 없어질 거라고 보는 거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일정 분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훈기 위원** 그런데 그게 되게 추상적이고…… 근거나 데이터가 있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실제로 700억 이상 규모라는 게 우리가 예외 심 의를 해 보면 85% 정도가 그냥 대기업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서비스의 운영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중소업체나 중견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한 것 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말씀 올리면 700억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도 예 외 심의를 하면 85% 이상 대기업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85% 이상 당연히 대기업이 하는 부 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풀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기획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 예외 심의에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업체나 중견기업이 합의하 는 선에서는 일단 풀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훈기 위원**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은 연매출액 800억 이하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 고, 그리고 연매출 8000억 미만 중견기업은 40억 이상, 또 중견기업 중에 연매출 8000억 이상은 80억 이상, 그리고 대기업은 700억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현행 고시가 그렇습니다.
- ○**이훈기 위원** 현행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20억, 40억, 80억이고 현재 합의되어 있는 내용은 중소업체는 모든 사업, 그리고 초기중견기업은 40억 이상, 그리고 중견기업 8000억 이상 은 80억 이상, 그러나 상출제 대기업은 700억 이상,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이훈기 위원** 이게 지금 개정하려는 내용, 고시잖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렇습니다. 그게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 ○**이훈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준비하신 거예요, 기준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이게 예전 기준이었습니다. 원래가 20억, 40억, 80억이 13년 전에 정리를 하면서 13년에 저희가 고시를 제정할 때 그 당시 상황을 합의를 통해서 반영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억 구간이 정확하게 커렉트(correct)한 라인이다, 20억이 라인이다, 시장 규모를 이렇게 했던 부분은 그 당시의 내용들을 상의해 보니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미 20억, 40억, 80억 그다음에 전체 불가가 정리돼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해하시는 부분들은 이 구간에 대해서는 준거점이기 때문에 이 준거점을 가지고 바꿔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훈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 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다 소통을 하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합의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지금 개정안은 합의가 있습니다.
- **○이훈기 위원** 아, 합의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현재 완전히 합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훈기 위원 이 정도면 인정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중에서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협의 과정에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중견기업의 문제였는데 대기업이 일부 700억까지는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중소업체 구간들은 굉장히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일단 중견기업에서도 이 부분은 수용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한민수 위원 그러면……
- **○이훈기 위원** 하나만 더……
- ○소위원장 김현 잠깐만, 이것 너무 오래 토론되는 것 보니까요······
- ○노종면 위원 중견기업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돼 있는데?
- ○**한민수 위원** 반대한다고 돼 있는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이게 법안이 발의됐을 때 기준으로는 당시에 중견기업이 반대했는데 그 이후에 과기부가 중견기업협회랑……
- ○**이정헌 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이것을 제출할 때 정정해 가지고 와야지요.
- ○**한민수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에는 반대한다고 딱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것은 검토보고 요지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9쪽부터 참고자료를 보시면 그 이후에 과기부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협회 등과 의견을 조율했다는 내용이 지금 현재 12쪽에 보시면 하한 40억, 80억, 700억으로 합의한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 ○이상휘 위원 다 합의가 됐네요?
-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현재는 그렇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지금 사업자 그룹들 다 합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노종면 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소위원장 김현** 예, 얘기하십시오.

○**노종면 위원**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합의하고 동의할 성격이 아니잖아요. 지금 봐 도. 중소기업 늘어나고 어차피 예외 심의하면 85%가 대기업이라고 하셨지만 그 15% 늘 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건데……

그리고 출발 자체가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하면 공공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더 좋 아질 거라고 하는 그 출발에 어떤 논리적인 모순이, 어차피 85%가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서 이런 것 열어 주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미 그 경쟁도 활발한 거고 그리고 수준도 높아져 있었어야지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기업집단을 이끌고 있는 그런 데서 경쟁력을 보인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위원님, 이 분야를 저희들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자정부 시스템 자체의 상황을 좀 살 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계속 도입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었던 SI 방식을 이제는 정리하고 걷어 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를 모듈화해 가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재설계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역의 구분으로 지금 13년을 운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전체적인 폐지 부분이 아니고 그래도 업역을 관리하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이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선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국민 민원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소업체의 능력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이고 그리고 대기업들도 새로운 방 식에 있어서 기존의 문제점은 개선하면서 시스템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 다.

대기업이 하면 대기업이 잘할 것 같으니까 허용하자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전자정 부 사업들 자체의 선진화와 내용에 있어서 중소업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구간까지는 원 천적으로 봉쇄했던 부분을 합의된 내용까지는 허용을 좀 해 주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 다.

○김장겸 위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소위원장 김현 예.

○김장겸 위원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이렇게 너무, 지금 13년 동안 두니까 쪼개기 발주 이게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ISP(설계·기획 사업) 그것도 문제지만 유지·보수 이런 게 장애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이 '책임 소재가 과연 중소기업에 있냐' 이렇게 질문하셨 는데 그걸 떠나서 그동안에 보면. 차세대 라이선스 구축 사업 이런 게 보니까 개통 당시 부터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고 그리고 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이 것도 지속적 오류, 저소득층 급여 지원 이런 게 차질을 빚은 적이 있고 행안부의 행정 전산망 장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EBS 온라인클래스 재구조화 사업에서도 원격수 업 장애가 발생했고 코로나19 백신예약시스템도 한때 사전예약 업무가 마비되어서 큰 혼 란을 빚었는데 이런 게 어떤 쪼개기 발주, 쪼개기 유지·보수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기업을 어떻게 봐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민들의 편익, 이용자들의 편익에서 출발했고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점을 한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헌 위원 마지막 한 말씀만 좀 더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당초 취지가 있을 것인데 경쟁력만을 강조하고 법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육성하던 다른 모든 것들도 경쟁력이라는 이름하에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참여를 늘리긴 하되 예를 들어서 700억 이상은 반드시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대안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 ○김장겸 위원 반드시가 아니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게 지금 고시의 상생협력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차피 경쟁을 해서 들어오게 하면 그런 상생협력 점수에 따라서 당연히 대기업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이정헌 위원** 그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점수가 0.1점, 1점 차도 굉장히 좌우하기 때문에 평가점수에 상생협력을 평가하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 ○**이정헌 위원** 의무화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의 정도로 지금 개정이 되는 겁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 ○**이정헌 위원** 컨소시엄으로 구성돼서 들어옵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 ○**이정헌 위원** 그걸 아예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지금 고시의 기술성 평가나 내용에 점수가 포함 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혼자 들어오면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 ○이정헌 위원 의무화하지 않아도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 ○**노종면 위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자정부 시스템의 선정이나 관리 부분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의 책임이 발주처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중견기업·중소기업의 기술력 문제인 건지…… 자꾸 대기업이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걸로밖에 안 읽혀요. 대기업에 맡겨야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제가 볼 때는 참 동의하기 힘든 고정관념에서 출발하는 것같고. 지금 왜 유독 정부 파트에서만 이런 문제가 생길까라는 그런 의문도 갖게 되거든요.

○소위원장 김현 일단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 항이 오랫동안 되기 때문에……

- ○최형두 위원 그게 아니라 하나만……
- ○**소위원장 김현** 이견이 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요……
- ○**최형두 위원** 이게 상당히 많은 논란이 해소됐고 특히나 업계 내에서 합의가 됐다는 사안인데 충분한 동의가……
- ○소위원장 김현 아니, 합의가 됐다는 것은 정부 측 얘기인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는 것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좀 더 협회의 ......
- ○최형두 위원 아니, 그 뒤에 보면……
- ○**소위원장 김현** 정부에서 의견 청취를 했고 또 저희 차원에서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 ○최형두 위원 위원장님,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이게 지금 법안의 긴급성은 어떻습니까?

- ○**소위원장 김현** 긴급하지 않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저희로서는 앞으로도 차세대 발주들이 많이 일어 나는데 그래서 좀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공정보화 사업을 대기업이 잘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지는 않 았습니다. 그 점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렇게 진행은 안 했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예, 알겠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대기업 참여를 100% 허용해 달라는 대기업의 입 장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협의를 해 나갔던 부분이라는 말씀 드 리겠습니다.
- ○**최형두 위원** 쟁점을 좁혀서 다음번에는 좀 통과시키도록 하지요.
- ○**소위원장 김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8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자료 보시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황정아 의원안은 이미 전체회의에 상정되었고 대체토론, 소위 회부돼서 축조심사까지 했고요. 이하 박주민 의원안부터 이기헌 의원안까지는 소위로 직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정아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시되 다른 의원안의 영장주의 부분과 그다음에 이용정 보 사후통지의 유예에 관한 내용에서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황정아 의원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나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라든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 집행,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이후에 이용자에 대한 사후통지 시에 또다시 법원 허가를 받아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기 간을 현재는 한 번에 3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서 6개월 범위 내에서 당사자한테 통지 유 예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1회 3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쪽 보시겠습니다.

박균택 의원안과 권향엽 의원안은 이런 내용들을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라서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 법사위 소관 사항입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제도 개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원이나 검사, 수사기관, 정보수사기관 등에서 정보수집을 위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해서 제공받는 내용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에 보면 성명이라든가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그다음에 가입일 또는 해지일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통신이용자정보는 법원 허가 없이 수사기관 등 정부 관서의 장이 실무적인 협조 요청만으로도 제공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통비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기 관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5쪽 보시면 통신이용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구분해 두었습니다. 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상에 근거를 두고 있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상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용자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통신사실 자료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되는 겁니다.

사전 절차는 현재는 수사기관이 요청을 하면 통신사업자가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검사·사법경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서 또는 정보수사기관일 경우에는 고법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후적으로는 가입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물론 과기부장관에게도 운영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 허가를 거치게 하자는 취지는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이라든가 또는 집행부서의 입장에서도 보면 최소한으로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만 확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칫 수사 지연이라든가 피해자 도주, 증거인멸 우려, 그다음에 해외 입법 사례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도 보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은 이미 수사에 해당된다고 봐서 이를 통한 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굳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전례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은 과기부나 경찰청, 인터넷기업협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악화라든가 또는 기업들의부담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황정아 의원의 개정안에 또는 영장주의를 채택하자는 이런 입법취지와 함께 그다음에 또 실제로 집행하고 있는 수사기관 수사의 문제점 또 신속성을 요하는 수사의 문제점 등을 감안하면…… 또 해외 법제 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9쪽 보시겠습니다.

9쪽은 사후통지 유예기간 단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1회 3개월씩 두 차

례에 걸쳐서 6개월 범위 내에서 당사자한테 통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다…… 예외적인 경우는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사건관계인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 협하는 경우에,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의 경우에는 조금 더 통지를 유예할 수 있 는데 그게 아무리 유예를 해도 6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3개월로 축소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11쪽 보시게 되면 이에 대해서도 역시 과학기술정통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 에 대응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예기간 산정이나 해외 입법례, 타 입법례 등을 감안, 특히 타 입법례라는 게 통비법상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상 등의 입법례 등을 보면 개정안이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는 입장이고요.

경찰청도 기본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도 통비법상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유예할 수 있는 점, 금융실명법상 금융정보거래도 유예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면 너무 과도하게 단축하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쪽, 작년 대체토론 때 보면 최형두 위원께서도 아무래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통신사찰과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고 헌법재판소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 를 조금 과도하게 도입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 있었고요.

그다음, 노종면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임의 규정 수사수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당 사자에게는 의무 규정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 도입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당연히 황정아 위원께서는 영장주의 도입 필요성을 개정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4쪽을 보시겠습니다.

소위를 한 번 했습니다. 소위를 한 번 했는데 그때도 아무래도 최형두 위원은 일관되 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사 지연 어려움 등을 감안하고 또 해외 사례 등을 보니까…… 영 장주의를 적용하는 사례를 한번 찾아보라고,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조사하고 찾아본 바로는 아무래도 정보에 대해서 영장주의를 요 구하는 사례를 찾기는 사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검찰이나 경 찰, 수사기관 등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의 얘기를 한 번 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상휘 위원께서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 모두 영장을 요구하게 되 면 너무 절차, 시간도 많이 되고 범죄 수사가 지연돼서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 이 런 말씀이 있었고요.

과기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서 정책적으로 한번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문대비표를 보고 판단하 시는 것보다……

예를 들면 황정아 의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기헌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윤종 오 의원안 이런 부분이 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가능한 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 가 있지 기본적으로 영장주의를 도입할 것인가 또 아니면 사후에 당사자에게 통지해 줘 야 되는 유예기간을 지금 현재 6개월인데 3개월로, 그것도 법원 허가를 얻어서 단축시켜 야 되는 게 적절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논의를 한번 하시고 영장주의를 도입 할지 말지 정도를 결정하시면 구체적인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사후에라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신중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여러 가지 일 관된 반대 의견들이 있고 신중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신중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소위원장 김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 ○소위원장 김현 예.
- ○최형두 위원 제가 지난 소위 때도 이것 말씀…… 많이 늦어졌습니다. 9월 3일 날도 있었는데 이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어 가지고 아마 통신조회 사실이 많이 드러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부에서 많니, 적니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사실은 어느 정부나 다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들도 보면 공수처로부터 몇 개월 전에 이런 자료 요청을 받아서 제공했다라는 문자도 받고 합니다. 지금은 통계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것은 이게 범죄의 수사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다, 그리고 외국에서 도 여기에 영장주의를 적용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일 요즘 모든 수사가 통신사실,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가 누구 거냐…… 이게 범죄자의 것이냐 이게 피의자의 것이냐 이게 단순한 피해자냐 이런 것들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지금 영장주의를 통해서 제약하게 되면 범죄의 초동 수사 단계에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이 실제로 일선 수사기관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지금도 밖에와 있습니다, 호소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의 입법 사례…… 걱정하는 바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어떤 통신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엄격한 영장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것은 단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그런 정치적 사안을 넘어서서 이른 바 박사방이니 무슨 N번방이니 또는 무슨 사기 사건이니 지금 특히 피상……

저는 바로 어제도 우리 가족이 피싱을 당하는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빨리 범죄 확대를 막고 피해를 복원하고 또 추가로 범죄를 할 수 없도록하는 그런 기초 단계에서 일반적인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도 영장주의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 거의 없다, 지금 선진 국의 경우를 보면요. 그리고 금융실명법의 거래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 과잉금 지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들어 보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기회를 드려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더 얘기하실 위원님들······
- ○**노종면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 ○**소위원장 김현** 노종면 위원님.
- ○**노종면 위원** 차관님께····· 신중검토가 사실상 반대 의견이신데 이게 영장주의에 대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유예를 할 경우에 법원을 통해 서 한다거나 이런 수정된, 완화된 규제도 반대하시는 건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일단 저희 과기정통부가 수사의 전문기관은 아니 기 때문에 수사가 일어나는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 같고요.

일단 영장주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의견들은 지금 통비법상의 통신사실확인이나 그다음 감청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원의 영장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 가장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전화번호가 누구 거냐 그리고 가입일이 언제냐 이렇게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수사에 차질을 빚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통지 의무는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고, 수사기관은 전체적인 유예기간 역시도 수사의 연속성이나 내 용 측면에서 보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신중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말씀을 전달드렸습니다.

-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 ○**소위원장 김현** 한민수 위원님.
- ○**한민수 위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집계를 해 보면? 혹시 아시 나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한민수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주셔서 저희들도 철저하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136만 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24년 6월에 계속적으로 떨어 지고……

- ○**한민수 위원** 이게 분류가 돼요, 뭐가? 어떤 건으로 제공했다는 게 나옵니까? 아니 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기본적으로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는 없습니다.
- ○한민수 위원 없는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저희가 알아 버리면……
- ○한민수 위원 그것은 정리가 되겠지요,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건으로 한 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렇게 자기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통계를 조사하는 저희 입장에서 그것을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이상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상휘 위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통비법에는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지 않습니 까? 그렇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통비법에 두 가지가…… 감청은 당연히 해야 되고 통신사실 관계는 내가 언제 누구하고 전화를 했다. 몇 번 했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영장에 대해서는……

- ○이상휘 위원 차관님, 지금 우리 국내에 핸드폰이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5000만 대가 넘습니다.
- ○**이상휘 위원** 5000만 대 되지요.

모든 수사는 가장 기초가 그러면 핸드폰으로 봐야 되겠네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상휘 위원 과기부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모든 범죄에 대한 기초는 이 핸드폰 안에 사실 다 들어 있어요, 여기 안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찰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에 대해서 사실확인을 한다든가 이것은 통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한다지만 이것을 영장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단순한 통신이용자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겠습니다만? 긴급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영장을 사후에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수사가 위축될 우려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통신이용자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영장을 통해서 제한한다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수사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또기초 수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방기하는 듯한 형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위원장님께서 수사기관의 입장을 한번 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부분의 국민적 피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여기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 ○소위원장 김현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지금 법 개정을 하는데 수사기관의 입장을 들어 보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 ○이상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수사라는 것은 큰 범위에서 이야기할 필요 보다도……
- ○소위원장 김현 아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판단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도 사실은 여기 경찰이 오겠다고 행정실 통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석해서 설명하겠다고, 오늘 경찰이……

행정실에서 경찰하고 어떻게 온다고 그랬지요, 오늘?

-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경찰하고 검찰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요. 경찰·검찰이 와서 참석하겠다고 그래서 일단은 오지 말라고……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기 위워님.

- ○이훈기 위원 지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계 보면 2023년에 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에서 463만 1310건인데 이 중에 나중에 범죄로 확인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조회 건수 중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훈기 위원 그런 통계가 지금 있어야지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 기는 한데……

- ○신성범 위원 그래서 불러서 듣자는 것 아니야.
- ○**최형두 위원** 그것 검경에다 들어 보면 어떨까요? 검찰·경찰에서…… 과학수사단도 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 보시지요.
- ○소위원장 김현 검경에서 와 있다고요, 지금?
- ○최형두 위원 예.
- ○**소위원장 김현** 아니요, 안 왔어요.
- ○최형두 위원 왔어요.
- ○**소위원장 김현** 왔다고요?
- ○최형두 위원 예.
- ○소위원장 김현 오지 말라는데 왔어요, 경찰하고 검찰이, 여기에?
- ○최형두 위원 밖에는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늘 계속 심사할 것 같으면 부를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결론 낼 것 같으면 꼭 듣고서 결론 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지금 이훈기 위원 얘기한 것은 확인해서 알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이정헌 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라고 하는 것이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일정 부분 이 해하기는 합니다만 통신이용자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그냥 모든 것을 다 국가와 수사기관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무분별한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피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 는 했습니다만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와 뭘 했는지, 어디에서 만났는지까지 다 탈탈 털리는 상황에서 얼마나 개인정보가 위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 하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신 중하고 엄격하게 규제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로 신속하게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통신이용 자정보를 획득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두 차례,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지 나치다고 봅니다. 수사 초기 단계라고 한다면 저는 1회, 3개월 이내로 하는 게 맞다고 생 각하고 3개월도 아니라 어찌 보면 조금 더 앞당겨서 한 달이라든지 이런 식의 대안도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신속한 수사 초기 단계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저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이해민 위원님.
- ○**이해민 위원** 우선 방금 이정헌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통지 유예 시 법원 허가 절차 도입 및 유예기간 단축하는 부분에 같은 의미로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전문위원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유사 입법이 21대에서 발의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논의가 됐을 때에도 통신자료의 통지 규정에 대한 것을 먼저 도입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영장주의에 대한 부분 또한 찬반 논의가 있었습니까? 거기서 저희가 가져가야 될 게 있는지, 이것은 질문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자료 94쪽을 보시면 21대 국회 관련 영장주의 논의 사항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당시에도 지금 위원님들처럼 찬성, 반대 입장이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논의가 오고 갔었습니다.

# ○**노종면 위원** 저도 한 말씀……

사실 출발이 수사 권한 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시작이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한 반성이 전제가 된다면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아주 민감한 수사를 신속하게 하려는데 전화번호밖에 몰라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해 보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 보면 제가 볼 때 범죄자가 10명 중의 1명이 있든 100명 중의 1명이 있든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가 이 제도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통지 시점이 조회한 날로부터 며칠 간은 안 이루어져야 된다, 통지가 안 이루어져야 된다, 수사 필요상. 그런데 지금처럼 몇 달 동안 쥐고 있으니까 우리 정보가 노출되는 것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통지 의무 시한을예를 들면 열흘 이내로 한다.

그래서…… 이것은 예입니다. 5일 이후 1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이것을 기본 전제 조건, 이런 식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지를 유예해야 될 그런 사건 특수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처음에 조회할 때야 수사의 시급성 때문에, 범죄자가 혹시라도 도망칠까 봐 그런 점을 이해한다면 유예는 좀 넉넉한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바빠서 못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득해라, 이 기간 안에.

그러면 이게 5일에서 10일이 되든 10일에서 20일이 되든 이런 통지해야 될 기간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유예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6개월이 과하다는 데는 상당수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조회당해 보신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되 그것을 1차 30일, 최장 60일 이렇게 할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식의 어떤 접근 방식을 달리해 보면 어떨까. 제가 영장주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 고민을 통해서 저는 영장주의보다는 이런 식의 제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입장이 좀 선회했는데 같이 고민을 더 해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 ○**신성범 위원** 위원장님.
- ○**소위원장 김현** 말씀해 주십시오.
- ○**신성범 위원** 신성범 위원입니다.

저도 작년에 보니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를 받았는데 우선 기분은 안 좋지요. 그러니까 누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 가지고 했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유심히 보니까 통신이용자정보라는 게—확인할게요—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입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 ○**신성범 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LG유플러스에서 제공을 했다는 거고. 여기에 대

해서 이것은 사실확인입니까, 아니면 수사 단서입니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 팩트만 전달하는 겁니다.
- ○**신성범 위원** 그래서 저는 유심히 보니까 헌재가 2022년도에 판결한 게 있어요. 이것 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아니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는 헌재 판결이 2년 전에 나왔어요, 22년 7월이니까 3년 됐는데 나왔고.

유심히 보니까 또 하나는 최소한의 기초정보다. 다시 말하면 신상이나 인격을 묘사하 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사실은 법률가들의 해석이기는 해요. 이렇게 본다 면 이것은 기분과 달리, 저의 감정과 달리 별거 아니다……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확인 차원이다. 사실 어떻 게 보면 증명이겠지요,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조금 기분과 달리 조금 은 흥분을 하지 않을 필요가 있고.

작년에 460만 건이라는 그러는데 올해 상반기 얼마 됐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작년 상반기에 130만 건입니다.
- ○**신성범 위원** 아, 작년 130만 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재작년에, 2023년에 460만 건인데 그렇게 하면 220만 건 정도가 상반기에 돼야 되는데 현재 130만 건으로 돼 있습니다.
- ○**신성범 위원** 이렇게 되면 건건을 판사한테 가져가면 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 예요, 이건 또. 사실은 현 상태로 보면, 보이스피싱 이런 것은 다 쫙 드러나는 순간 도망 갈 거 아니에요. 핸드폰 꺼 버리고, 바꾸고 단말기 다 바꿔 버리고 이렇게 될 터인데, 범 죄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렇 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법이 개정되면 집행하는 주체들은 수사기관일 텐데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될지에 대해서 저는 법안 만들다 들어 보면 지극 히 당연한 절차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못 오시게 했는지, 위원장님이 왜 그랬는지 모르 겠는데 저는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비현실적으로 되면 그 책임은 국회가 오로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 ○소위원장 김현 계속 심사하려고 오지 마라 그랬대요.
- ○최형두 위원 오늘 결정 안 한다고 하잖아.
- ○**신성범 위원** 감사합니다.
- ○**김장겸 위원** 계속 심사를 해도 6개월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참고로. 좀 그걸 줄일 필 요가 있다.
- ○**최형두 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지금 외국의 경우는 그런 걸 어떻게…… 그것 한번 사례를 좀 찾아봐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외국의 경우는 저희들이 92페이지에 자료를 정리해 뒀는데요.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도 저장통신법상에 가입자 성명, 주소, 접속기록 및 유지시간, 전 화번호 등 기본 정보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서 제공받습니다. 독일도 통신법이나 형사소송법상에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서 제공받고 있고요. 프랑스도 우편 및 전기 통신법에도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요청해서 받습니다. 그다음에 영국도 일본도, 특히 일 본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통신내역조차도

영장 없이 같은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영국은 당연히 안전보장, 범죄수사, 공공안전에 필요한 경우 통신사에 서면 요청해서 제공받습니다.

참고로 유예기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박주민 의원안이나 윤종오 의원안 같은 경우에 60일 정도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합의하실 때 계속 심사를 하셨다가 다음에는 그 정도의 의견은 다시 논의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영장주의 도입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한번……

- ○노종면 위원 외국 사례를 우리가 참고하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비교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영장주의는 아니라니까 이해를 했는데 인구 대비 조회 건수라든가 그다음에 통지하는 평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알겠습니다. 인구 대비 조회 건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저희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던 경우는 아까 통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아직은 그 내용이 없다 하고요. 그런데 통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의 자료에 의하면 통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노종면 위원** 다른 나라는 통지 의무가 없다고요?
- ○최형두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 ○노종면 위원 우리나라 좋은 나라네요.
-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조사관 말로도 해외에는 통지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 ○**한민수 위원** 그만큼 엄격하게 수사를 하겠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다시 계속 논의하도록 하고요.
- ○**이정헌 위원** 그런데 이걸 국가나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통지도 안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이지요. 이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 ○**소위원장 김현** 오늘 가야 될 길이……
- ○**이정헌 위원** 내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를 다 들여다본다는 건데……
- ○**소위원장 김현** 이정헌 위원님, 가야 될 길이 멉니다.
- ○**이정헌 위원** 중요한 겁니다. 개인정보.
- ○소위원장 김현 아까 노종면 위원님하고 이해민 위원이 안 계셔서······

의사일정 1항을 처리를 하려고 그립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출자 기관을 특정해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견이 없는 관계로……

- ○노종면 위원 이견이 없었어요, 여기에?
- ○최형두 위원 예.
- ○**소위원장 김현** 왜, 또 이견 하려고요?
- ○노종면 위원 늦게 와서…… 그래도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 ○소위원장 김현 안 돼요. 늦게 온 사람은 없습니다.
- ○최형두 위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의사일정 1항은……
- ○**노종면 위원** 죄송한데요. 이게 지능정보화가 뭔지 의미가 지금 규정이 돼 있어요?

- ○소위원장 김현 지능정보화법에 의미 규정이 돼 있고요. 특정되지 않은 것을 특정시키 는 거예요.
- ○노종면 위원 이런 단체에 AI 기술 이걸 하라고요?
- ○소위원장 김현 자, 의사일정 1항은 원안대로······
- ○최형두 위원 걱정하지 마세요.
- ○**소위원장 김현** 걱정하지 말래요.
- ○노종면 위원 아니, 최 간사님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더욱 걱정이 되는데……
- ○**소위원장 김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 ○**노종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노종면 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을 해 주세요. 이의는 이의지요.
- **○소위원장 김현** 진짜로?
- ○**노종면 위원** 제가 아무리 노종면이라도 이의는 이의지요. 저 검토하고 왔어요.
- **○소위원장 김현** 그래서 반대예요?
- ○**노종면 위원** 아까 토론하는 시간에 제가 빠졌으니까 이의 입장만 밝히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얘기하세요.
- ○**노종면 위원** 이의 있다고요. 표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최형두 위원 표결해야 되나, 이걸?
- ○**노종면 위원** 기록에는 남겨야 되니까.
- ○소위원장 김현 반대예요?
- ○**이정헌 위원** 이견을 말씀하시지요. 이견을.
- ○**한민수 위원** 말씀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이의를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 ○노종면 위원 기회를 주시면……
- **○소위원장 김현** 예, 말씀하세요.
- ○**노종면 위원** 지금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화 이게 지금 의무로 적용하겠다는 거잖아 요, 사용하도록?
- ○소위원장 김현 책무. 책무가 되는 거지요.
-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의무가 되는 거잖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책무입니다, 시책에 대해서.
- ○**노종면 위원** 책무랑 의무가 어떻게 다르지요?
- ○소위원장 김현 책임이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거고, 의무는 아니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의무는 시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점들을……
- **○소위원장 김현** 좀 다르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법적으로 책무로 돼 있습니다.
-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져야 할 의무든 책무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돼냐는 겁니다. 그게 특정이 돼야 이 기관들도 할 수 있겠다 또는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될 텐데 그것부터가 모호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뭘 하라는 거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지금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우리나라 국가정보화의 기본적인 모법이고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각 분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정보화 시책을 종합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들여다보는데 여기에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법적 범위와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감사원에서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조 다 항에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것의 10% 정도가 행정안전부가 정보화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나 내용들을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계획에 반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모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 조항에 해당 여부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의 법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 기관은 명확해지는데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하냐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행정안전부가 작성지침이나 내용을 정비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포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로서는 정책이나 시책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에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점검을 받고 이런 내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면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거네요? 이게 말이 지능정보화 그래 가지고 뭐가 좀,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은데 실체가 그런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저희들도 사실은 종합적인 출연기관이나 내용에 대해서 국가정보화 측면에서 이렇게 전체 시행 계획과 내용들을 정리하는 부분이고 포괄 범위와 시스템의 정합성이나 이런 부분을 보는 부분이어서 그것이 뭐 강제적인 의무화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실제 감사원이 들여다보니 행안부에서는 10%에 해당되는 800개 중의 80개 정도를 일정한 기준으로 정리하고 자료를 제출을 받는데 국가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 정보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빠지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라는 정의가 되어 있지만 좀 더 명확하게 모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담아 주면 행안부가 여러 가지 하는 데 빠지지 않고 정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의의 명확성을 두고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종면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걸 압축하면 행안부가 지시하는 일을 실행하게 되는 거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체계냐 하면 국가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각 개별 부서가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니까 정보화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그것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제보다는, 아마 이것은 저희가 진행을 해 봤을 때도 통제라기보다는 정보화 사업의 효율성 측면이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노종면 위원** 잘 이해가 안 되지만……
-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위원님, 그런데 여기 호에 보면 지방공기업법도 포함되고 있다 는 얘기도 보면 크게 봐서는 같은 범주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 다.
- ○**노종면 위원** 딱 대상이 되는, 우리 지역에도 있는 기관들을 보면 뭘 해야 될지 깜깜 해할 것 같아서 그래요. 결국은 페이퍼 워크나 하지 않을까. 말이 출자·출연 기관이 된다 고 하지만 지자체 출연기관들 직원들이 몇 명이라고…… 여기 뭐 거창하게 AI. 데이터 수집·분석, 클라우드, 상호…… 상호교환기술은 또 뭐예요? 이런 것들 가지고 페이퍼 워 크 할 거리만 막 내려 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래서 반대해요?
- ○**노종면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표결해야 되겠네요, 또.
-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 ○소위원장 김현 보류요?
- ○**한민수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최형두 위원** 다음에 하시지요.
- ○**한민수 위원** 급하지 않다면……
- ○**최형두 위원** 노종면 위원님 염려는 짐작이 됩니다만 그러나 지능정보화를 위해서 그 동안 있던 법인데 그 기관이 명확치 않으니까 좀 기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인데…… 그 리고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표준화도 필요합니다.
- ○**노종면 위원** 지역에서 아마 해당된 기관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 각이…… 민원 때문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항의했을 때, 항의 또는 하소연했을 때 뭐라고 설명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 ○최형두 위원 구체화를 표준화하는 것 같은데……
- ○**노종면 위원** 그런 거면 좋겠어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위원님, 그러시면 좀 보류시켜 주시면 해당 사항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위원장님,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는 것하고요. 그 래서 노종면 위원님께 그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 ○**최형두 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은 보류했지요, 이미?
- ○소위원장 김현 3~8항 보류했어요, 이미.
- ○최형두 위원 그런데 그 논의에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영장주의에 대해서 영장주의로 엄격하게 제한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합의가 이뤄진 것이 상당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 ○김장겸 위원 예.
- ○**이정헌 위원**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 ○**최형두 위원** 명시는 아니지만 상당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이정헌 위원** 저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소위원장 김현 엄격한 영장주의, 엄격한 영장주의. 네 분은 다 엄격한 영장주의고 저는 얘기 안 했고요.
- ○최형두 위원 계속 논의해야 될 것 같네요.
- ○소위원장 김현 이것은 한번 토론회를…… 최근에는 안 했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AI나 딥페이크처럼……
- ○한민수 위원 알고리즘?
- ○소위원장 김현 아니요, 아니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 절차 도입, 이게 이슈가 있을 때는 굉장히 논의가 진행되다가 또 이게 없어지면 조금 더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한번 좀 공론화시켜서 여야가 함께 논의를 해 볼 필요가……
- ○신성범 위원 의원실에서 하세요.
- ○소위원장 김현 아니, 의원실에서는 개별적으로 했어요. 했는데 한번······
- ○신성범 위원 그러면 여야 함께해요.
- ○소위원장 김현 예, 최형두 간사님하고 제가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이정헌 위원** 예, 논의하시지요.
- ○소위원장 김현 예,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형두 위원** 역대 정부를 보면 계속…… 통계를 보면 통계에서 사실이 잘 확인되는 것 같아요, 필요성은.
- ○**소위원장 김현** 그러시지요.
  - 이것은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항부터는 방통위 소관 법률안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9항부터 14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법안심사소위 마지막 자료입니다.

SNS·알고리즘 제한 관련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심사경과 보시면 윤건영 의원안과 김장겸 의원안은 전체회의 대체토론, 소위회부해서 축조심사까지 했고요. 안철수 의원안, 조정훈 의원안, 김태선 의원안, 조인철 의원안은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된 내용입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유해매체물 또는 알고리즘, 중독성 콘텐츠,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만 여기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또 의무 내용을 부과하는 내용들입니다.

표를 보시면 윤건영 의원안은 예를 들면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든가 김장겸 의원안은 중독성 콘텐츠로부터, 안철수 의원안 그다음 조정훈 의원 안 다 과도한 이용 등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용 대상은 14세 미만이냐, 조인철 의원안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느냐, 의무 대상 사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업자냐 아니면 중독성 콘텐츠 제공자냐 등으로 조금 구분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의무 내용은 14세 미만의 경우 회원 가입 승낙 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김장겸 의원안

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콘텐츠 노출·특정 시간 알림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내 용입니다.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은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하면 과태료를 둔다거나 또는 김 태선 의원안은 징역 또는 벌금까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자료 5쪽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요지는 그렇습니다. 아동의 SNS 사용 금지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 은 충분히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다만 이에 따른 아동의 실질적인 권리 제한 사이 에 상당한, 아주 정밀한 비교형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유해성 과 무관한 알고리즘 전반에 대해서 다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조금 필요해 보이고 또 대상이 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조금 더 엄밀하게 규정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방통위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는 입장이 있 었습니다. 그다음에 중독성 콘텐츠의 범위라든가 이런 게 불특정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 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나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청소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그다음에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경시하는 측면이 있고 청소년이 가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 사업자 부담 부분 등을 감안해서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법안소위에서 김장겸 위원은 청소년의 확증편향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뉴 욕주라든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서 한번 잘 검토해 보자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해민 위원은 기본적으로 SNS의 범위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허용되면 이를 통해서 다른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한번 세밀하게 설계하 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조문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조문별로 하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안철수 의원안, 조정훈 의원안, 조인철 의원안 같은 경우 사회관계망서비 스에 관한 정의 규정을 넣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소통 등의 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정보통신서비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조금 엄밀하게 한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방통위도 이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다는 입장입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또한 마찬가지로 사회관계망서비스의 범위가 너무 확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알고리즘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안 등을 보시면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결과물을 이 끌어 내는 연산·논리·규칙 및 과정을 말한다'라는 형태로 알고리즘에 부정적인, 즉 규제 를 위해서 알고리즘의 정의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방통위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쭉 보시면 방통위는 이런 알고리즘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입장에서 보면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장겸 의원안에 들어 있는 중독성 콘텐츠는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인데요. 이 또한알고리즘 콘텐츠 추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 콘텐츠의 정의도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에 영향이 적거나 경미한 요소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독성 콘텐츠가 정말 과의존 등 병적인 상태를 초래하는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구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한번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1쪽 보시겠습니다.

조인철 의원안은,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아까 김장겸 의원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인데요. 추천, 정보 이런 것도 의미나 범위가 불분명해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면 정의 규정 자체가 명확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개별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알고리즘에 의한 SNS 중독 방지를 위해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일정 부분 제한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이용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SNS 사용 및 알고리즘 추천에 대한 부모 동의 그리고 이용자 연령 확인 및 사업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알고리즘정보추천서비스 이용 시에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해서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포괄적인 정의 규정 및 불명확한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별 조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행정실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가 사실상 이메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정의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의 김장겸 의원님 안 14호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정 수용 의견이고, 중독성 콘텐츠의 의미를 나쁜 영향을 주는 콘텐츠로 한정해서 제 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아까 여기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심사자료 38쪽을 보면 아동의 SNS 제한·금지 관련 주요 해외 입법·정책 동향이 언론 보도에도 났고,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 금지가 플로리다·유타주 포함해서고요. 프랑스도 13세 미만 스마트폰 사용 전면 제한인데 이게 국가 전체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다음, 호주도 14세 미만 SNS 가입 금지 검토 중인데, 영국의 경우는 16세 미만 스마 트폰 판매 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게 소위 선진국의 흐름인데, 이것에 대한 배경이나 법이 이렇 게 되는 과정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도 14세 미만에 대해서 강하게 하자라는 입 법취지의 개정안 제안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기사로 보고 좀 놀랐는데 이럴 만 한, 소위 미국이나 EU 국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검토 된 게 있나요?

- ○**신성범 위원** 실무 국장이 설명……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기본적으로는 해외, 특히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SNS가 중독성, 그러니까 알고리즘 추천 기반으로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게 되 고 그러면 결국은 특정 이용자의 개인적인 이용 이력이라든가 많이 본 콘텐츠 위주로 추 천이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아무래도 기존보다 중독에 빠질 우려가 좀 높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미성년자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뇌 발달상으로도 중독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특히나 청소년·아동에 대해서는 알고리즘 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 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런데 왜 방통위는 신중검토예요?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저희도······
- ○소위원장 김현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실은 정보통신 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시아권에서는 1위 국가예요. 그렇다면 이런 해외 입법·정책 동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에게도 왜 이런 문제가, 특히 알고리즘의 폐해가 이번에 심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재생산되고 이런 사회적 현상이 직전까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이따 갑호, 을호가 발동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다 알고리즘 때문이 잖아요. 그렇다면 선진국에 이런 사례가 있고 하면 방통위가 검토를 하셔야지요. 그냥 그 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다라고 분리해서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그런데 일단 이 법의 전반적인 내용 은 어쨌든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규제 부분이 강한데요. 저희도 완전히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특히 아동·청소년의 SNS 제한과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다만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완전 반대 입 장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아예 전면 금지고 그다음에 14~15세 아동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흐름을 보면서, 저희가 신중검토인데 왜 신중검토인지에 대해서…… 보통의 경우 정부는 미국의 사례를 매우 따라가는 추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예, 그렇긴 한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 겠지만 지금 일단 플로리다만 전면 금지 규정이 있고요.
- ○**소위원장 김현** 아니, 어쨌든 이런 흐름이……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나머지는 아직도 검토 단계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러니까요. 플로리다하고 유타주는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돼 있고 오하이오주도 16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도입이된 거잖아요.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그래서 저희도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들도 SN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 ○**소위원장 김현** 어쨌든.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 ○한민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38페이지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보니까 유타주는 이렇게 18세까지 했어요. 18세면 사실 성인이라고 분류되는 건데. 호주는 아예 가입을 금지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영국은 스마트폰 판매를……
- ○**소위원장 김현** 검토하고 있어요.
- ○한민수 위원 예, 검토 중이고. 지금 우리도 이 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소위원장 김현** 예, 그렇습니다.
- ○**신성범 위원** 맞아요. 시사점이 커요.
- ○한민수 위원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려점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다음 할 때는 조금 더 자료들도 많고 정부 측이 많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자료를 좀 더……
- ○**최형두 위원** 이건 여야 의원들 모두가 발의한 법안이라서……
- ○김장겸 위원 이거야말로 공청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 ○소위원장 김현 알겠습니다, 공청회.
- ○최형두 위원 김현 위원장님이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요. 청문회나 공청회, 청문회겠지요?
- ○**신성범 위원** 공청회로 이건……

○소위원장 김현 공청회로 할까요? 공청회로, 방통위가 준비를 좀 해서 시일을 잡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22항까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마지막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5항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이건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내용입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조승환 의원안부터 조국 의원안까지 다 소위에 회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원이 하 나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인데 이 관련 법들을 심사하면 청원의 취지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심사가 되겠습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승환 의원안은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이고요. 최기상 의원안은 사실 공개의 범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공개로 축소하는 것이고 조국 의원안은 법정형을 하향하는 것입니다. 신동욱 의원안은 상습적이거나 재물 교부, 재산상의 이익이 있을 경 우 형을 가중하는 것이고 최기상 의원안은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 하는 거고 전현희·조국 의원안은 사실적시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친 고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획득한 이익 몰수·추징 조항은 조승환 의원, 이정헌 의 원안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이버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관련해서는 기술적·관 리적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이용자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들이 개 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구성요건·법정형의 변경 등 관련해서는 현행 명예훼손죄의 취지라든가 또는 명예훼손 죄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 그리고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지금 법사위에서 개정되고 있는데 그런 논의 동향 등을 봐 가면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명예훼손죄로 취득한 이익의 몰수·추징은 형법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이 미 일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따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겁 니다.

그다음에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 관련해서는, 사업자들은 늘상 하는 말 입니다만 새로운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좀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게 아 니냐 또 그게 사실상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 가 있었습니다.

신고 절차 마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방심위라든가 이런 데,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 로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구성요건·법정형 변경 등 관련해서 조승환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형을 상 향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는 아마 현재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형평성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 하자는 견해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걸 감안하면 상향하는 게 적절한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기상 의원안은 사실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축소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의 범위가 조금 확장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인 경우에만 사이버상 명예훼손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사생활 비밀과 무관한 사실이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8쪽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느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또한 사생활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 사이에 이렇게 불명 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축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현재의 결정 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형법과의 정합성을 위해서 현재 형법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과를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국 의원안은 법정형을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완화하자는 내용은 아무래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또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을 변경하는 내용 등과 한번 동시에 살펴 가면서 살펴보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신동욱 의원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습범이나 재물을 취득했거나 하는 경우에 가중 처벌하자는 얘기인데, 같은 맥락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여 기는 경제적 이득만 적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평판이라든가 이런 게 경제적 이득보다 더 큰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합의할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12쪽 보시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하자는 내용은 최기상 의원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만, 전현희·조국 의원안은 사실적시·허위사실 명예훼손죄까지도 친고죄로 하자는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피해자 의사를 상당히 존중한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범죄자한테 보복을 당한다든가 평판 악화를 우려해서 고소를 조금 주저하게 할 염려도 있고 또 명예훼손죄에 관한 수사종결권을 피해자한테 부여하게 되면 당사자한테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반의사불벌죄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측면도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헌재는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이 평등원칙에 그렇게 위반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을 감안해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친고죄 변경 등에 관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건들과 동시에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14쪽 보시겠습니다.

최기상 의원안은 명예훼손 관련 불법정보의 범위를 축소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비방 할 목적의 허위사실인데 이게 너무 확대되어 있으니까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의 대상으로 삼자는 얘기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사생활과 공적인 영역이 엄격하 게 구분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사적제재 수단으로 악용해서 명예훼손한 경우도 방 심위를 통해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방통위 입장에서도 방심위를 한 번 거쳐서 그 부분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방통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첫 번째 항 말씀드렸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정부 측 의견이요.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전체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법정형 변경은 형법과의 법적 균형 그리고 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이익의 몰수·추징은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에 관련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별 개정의 실익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는 사업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또 표현의 자유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조항과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살펴보신 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와 관련해서는 행정실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형법과의 법적 균형 및 형평 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의 최기상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실 검토의견에 역시 동의하는 입장 입니다. 형법 개정 논의 등을 고려해서 양자 간의 법적 균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는 입장이고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9페이지의 조국 의원안과 관련해서는 역시 행정실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 다. 형법 개정 논의 등을 고려해서 양자 간의 법적 균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신동욱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행정실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역시 형 법도 명예훼손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서 양자 간의 법적 균형 등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의 최기상 의원님하고 전현희·조국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역시 행정실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형법의 개정 논의 등을 고려해서 양자 간의 법적 균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최기상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또 사적제재 수단으로 악용되는 명예훼손 정보도 심의를 통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 ○**노종면 위원** 질문 있는데요.

지금 친고죄로 바꾸자라는 안을 내신 의원님들이 형법 개정안도 함께 내면서 그걸 반 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다 통일하자 이런 입장인가요, 아니면 이원화하자는 건가요?

-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같이 내셨습니다, 법사위에.
- ○노종면 위원 같이하는 거지요? 거기에서의 정합성 문제는 없는 거지요?
-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노종면 위원 그리고 조국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징역이 빠져서 처벌을 낮췄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벌금형을 훨씬 더 높여서 벌금으로 규율하자 이렇게 아예 규율하는 방향 자체를 바꾸자 이렇게 하는 입법취지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징역, 금고, 벌금 이렇게 보면 좀 낮췄다고도 볼 수도 있는……

○노종면 위원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민사소송이나 이런 걸로 이제 돈으로, 금전으로 이 범죄를 규율하려는 추세여서 그런 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현 저는 이것도 앞서 얘기했던 거랑······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굉장히 광범위하고 무도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고민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이런 게 잘 안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통위 자체에서 보고서를 제출할 때 보면 누가 요즘에 텔레비전 보냐, 그래서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이버로 인한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사회가 그만큼 광범위하게 지금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보고가 2022년도, 2023년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답이? 그다음에 인터 넷기업협회가 또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보면 사적검열 위험, 표현의 자유 침해할 우려 있다. 이건 2022년, 2021년도에 나온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상투적이잖아요. 변화된 상황, 범죄의 깊이와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의원들은 입법을 발의하고 있고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답변이 제출되지요? 앞서 얘기했던 거랑 동일한 거예요, 지금. 고민을 좀 하시고 추세의 흐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서 입장을 가져오셔야됩니다.

말씀하세요.

○**이정헌 위원** 저도 위원장님과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SOS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체계와 정부에서는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형법이 있으니까 형법에 의율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형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동안 이 피해자들은 말로 못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가 때로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의 경우에도 권리침해와 불법정보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고를 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수용 입장인데 이와 관련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검토예요.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신고만 받고 끝나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도움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검토라고 하는 표 현 자체가 사실은 반대한다는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피해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이런 고통 속에서 피해를 받고 SOS를 쳤는데 이 게 사생활 침해라든지 명예훼손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냥 방관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을 통해서 재산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범죄가 드러나고 유죄판결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지 지 않고 여전히 재산상의 이득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 까? 형법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 요하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현 더 하실 의견이······
  - 이건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 거지요?
- ○김장겸 위원 그렇지요.
- ○소위원장 김현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 유미숙 외 5만 1408인에 대한 청원 진행을 청원소위에서……

말씀하세요.

- ○**김장겸 위원** 아니, 그게 지난번 수석 바뀌기 전에 수석님이 이게 법안과 연계돼 있다 해서 저걸……
- ○**신성범 위원** 청원심사소위가 아니라?
- ○김장겸 위원 예, 이쪽으로 넘기자……
- ○**신성범 위원** 동의했고.
- ○김장겸 위원 예, 동의했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저희가 같이 다루는……
- ○김장겸 위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 ○**최형두 위원** 청원심사소위원장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 ○**소위원장 김현** 그러면 이건 어떻게……
- ○**이정헌 위원** 한 번도 회의가 안 열려서……
- ○김장겸 위원 아니, 그게 들어온 게 그때까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것 하나밖에 없었 어요. 여기서 심사하시면, 이야기하시면……
- ○**신성범 위원** 저도 국회에서 청원 심사를 안 해 봤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절차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결의를 합니까, 법안에 담아야 됩니까, 아 니면 결과물을…… 우리의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청원은?

-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청원 심사 취지가 입법 개정 논의에 반영되어서 청원 심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소위원장 김현 그걸 담아서 지금 우리가 나온……
- ○**신성범 위원** 입법취지에 반영해라?
-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김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이 내 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담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담아 오시라고요. 이걸 담아서

고민해서, 신중검토만 하시지 말고 검토하세요. 언제까지 맨날 신중검토, 신중검토예요? 편안한 건 수용이고 조금만 이상하면 회피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 얘기한 청문회 준비하는 것 아울러서 최근에 사이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3월 5일 날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그때 보다 좀 진전 있는 답변을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15항부터 22항까지는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안건은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관,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 위원(10인)

김장겸 김 현 노종면 신성범 이상휘 이정헌 이해민 이훈기 최형두 한민수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정석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소프트웨어정책관 황규철

통신정책관 이도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